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2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038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6. 10.
판 결 선 고	2015.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836,890원, 농어촌특별세 1,783,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0. 12. 6. C로부터 [redacted]시 D 대 330.2㎡, E 대 3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B은 계약당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2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0. 12. 28. 잔금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잔금 중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금채무 4억 5,000만 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 6,000만 원을 B이 인수하며,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변제기일을 2011. 3. 15.로 하여 C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나. B은 2010.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C에게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4. 5. G로부터 B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매수하여 지분율 70%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라. 이후 C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8. 1. 대전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3. 9. 26. 원고가 2011. 4. 8. B의 주식 14,000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B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재무제표상 장부가액(8억 8,000만 원)에 원고의 지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6억 1,6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7,863,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83,680원 합계 19,620,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표준 산정의 오류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총 98,663,130원(매매대금 3,000만 원 몰취 + 공주농협대출채무 이자 13,757,700원 + 재산세 2,545,430원 + 소유권이전등기 등 비용 53,360,000원)의 손해를 입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B이 총 매매대금 8억 8,000만 원 중 1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해제되었다.

따라서 B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인수하기로 한 5억 1,000만 원(= 공주원예농협의 대출금채무 4억 5,000만 원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6,000만 원)은 법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장부가액 8억 8,000만 원 전부에다가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한 6억 1,6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

가)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법인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는 제외하고 증자나 매매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적용되는 점, 상장법인은 제외하고 비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는 점, 일반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도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하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또다시 법인의 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2

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다)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B이고,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에도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기 전 B이 과거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표준 산정의 오류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2

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하에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B의 2010년 재무제표상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 주장에 관하여

가)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비상장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설립 시에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2

그리고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에 비해 엄격한 주식 분산요건을 규정하여 특정인에 의한 주식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점주주에 의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에 차이가 있고, 또한, 상장법인에게는 기업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영사항이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등,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의 부실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사이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제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2

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담세력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고진흥

판사 정유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2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2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2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